

# 근 거 법 규

##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2. ~ 4. (생략)

##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4. 7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청년의 연령을 조례상 알기 쉽게 명시하고, 매년 수립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일원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연령을 알기 쉽게 명시(안 제2조)
- 나. 일자리 창출계획과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원화 조문 신설(안 제4조)
- 다. 시행규칙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14조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6517호, 2023. 2. 16.)
- 라. 입법예고: 2023. 2. 6. ~ 2023. 2. 27.(21일간) / 의견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